

보 도 해 명 자 료 (’11. 3. 1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UAE 원전공사비 정부보증이 없다” 보도에
대한 해명

- (가격상승조항) ‘09.12.27일 계약체결시 물가상승을 보상하는 조항(Escalation)을 마련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상 받도록 하고 있음

자료문의 : 지경부 원전수출진흥과 이영호 서기관(02-2110-3959)
한 전 UAE원전사업단 배원학 팀장 (02-3456-5604)

1. 기사 요지 (’11.3.11, 경향신문)

-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UAE 정부가 아닌 은행이 맡아 장기공사임에도 지급보증이 허술하다고 문제 제기
- 또한 고정가격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격상승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도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한전의 입장

- 2009년 12월 27일 한전과 UAE 에미리트 원자력공사(ENEC)가 맺은 원전계약은 원전건설을 위한 EPC계약

* EPC: Engineering, Procurement, and Construction

- 통상, EPC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고,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님

- 다만, 한전과 ENEC이 맺은 EPC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에 의거, 구체적 계약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랍